

한국치위생학회 편집위원회 규정

2001년 3월 제정

2006년 3월 개정

2008년 3월 개정

2011년 3월 개정

2021년 2월 개정

제 1조 본 규정은 한국치위생학회 제 17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편집위원회(이하 위원회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본 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을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편집위원의 선정은 한국치위생학회 회원 중에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

- ①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
- ② 논문 심사경험이 있는 자
- ③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편집경력이 있는 자

제 3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치위생학회 편집이사가 맡게 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 4조 위원회는 한국치위생학회지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,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- ①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
 1. 편집에 관한 사항
 2.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
 3. 권, 호에 게재될 논문 결정
 4. 게재료의 결정
- ②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
- ③ 논문심사를 위해서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편집 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된다. 논문 심사위원이 투고자와 동일 소속 기관인 경우, 저자와 이해관계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에서 사전에 배제한다.
- ④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규정의 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본 규정의 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④ 본 규정의 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⑤ 본 규정의 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